

#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(원당지구)

## 1.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위치

- 충북 영동군 양산면 원당리 산1-4 일원

## 2.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현황

지구명	소재지				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황			토지 소유자	비고
	시군	읍면	리	지번	유형	등급	현황		
원당지구	영동	양산	원당	산1-4	붕괴위험	D등급	L=400m H=30m	영동군	

## 3.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: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

## 4. 붕괴위험지역 지정 사유

- 점검결과(D등급65점), 저항력을 상실한 비교적 매끄럽게 발달된 도로방향 절리면 및 풍화진행에 따른 절리면의 이완 등 비탈면 안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로 인해 저항력의 상실을 초래하여 활동력 증가로 인해 붕괴가 발생됨.
- 붕괴구간의 좌우 비탈면도 기 붕락이 발생되어 방지책 하부에 적재되었거나 다수의 위험 절리군의 발달과 상부 이완된 암블럭들이 고각으로 형성되어 있어 추가붕괴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강도확보가 요구.

## 5.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-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
 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(管路)의 설치, 철탑의 설치, 도로·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
  -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·개축하는 행위
  - 옹벽·축대 및 측구(側溝) 등을 변경하는 행위
  -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

-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
- ※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(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)와 협의하여야 함.

## 6. 위치도 및 현황사진

### 위 치 도



### 현 황 사 진



□ 현황사진(상세사진)



붕괴부 상단 이완암블럭



붕괴부 상단 균열 및 썩기파괴



비탈면 골짜기로 이어진 낙석적치 현황



붕괴부 하단 이완 암블록